

##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금융감독당국의 민사제재금 부과 관련 사항 공시

공시일자: 2023년 9월 30일

신한금융지주회사는 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」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시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### 1. 개 요

- 2023.9.30.(미국 현지시간 기준 2023.09.29.) 신한은행의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 아메리카신한은행(SHINHAN BANK AMERICA)은 미국 금융당국(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, 핀센(FinCen)\*, 뉴욕주 금융감독청(NYDFS))과 전체 합산 미화 25백만달러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.

\* 핀센(FinCEN) : 美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로서 우리나라의 FIU와 유사한 기관

### 2. 경위 및 사유

- 2017년 6월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.
- 동 합의서 체결 이후,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, 자금세탁방지 인력의 증원, 고도화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
-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상당기간 동안 미흡사항들을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하였고, 그에 따른 제재로 금번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.

### 3. 향후 대책

-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현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착시키고 유지함으로써,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.

### 4. 기 타

- 금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체 부담할 예정으로, 아메리카신한은행은 동 과태료 납부 후에도 감독당국 요구수준을 충분히 상회하는 자기자본비율의 유지가 가능합니다.
- 과태료 부과 외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영업과 관련된 다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.